

소 장

원 고 1. 박〇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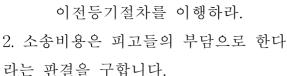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 시 ○ 구 ○ 동 ○ 전 1428m² 중 3분의 2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이◇◇는 피고 김◇◇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 ○○.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김◇◇ 는 원고들에게 19○○.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들 및 피고 이◇◇〉는 공동으로 피고 김◇◇〉로부터 ○○시 ○○구 ○○동 ○○ 전 1428m²(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함)를 금 112,000,000원에 매 수하였습니다. 위 매수인들은 약 3분의 1씩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 였던 것으로 그 지분비율 또한 동등한 비율입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원고들 지분 3분의 2에 대해서는 피고 이◇★◇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 이◇ ◇가 단독으로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 ○. ○○.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2.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다음부터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함) 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원고들과 피고 이⟨⟨⟨⟩는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었으므로 명의신탁된 이 사 건 부동산은 매도인인 매도인인 피고 김◇◇소유로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피 고 김〈\〉와 원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인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 고 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김◇◇를 대 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이◇◇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또 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피고 김◇◇와 원고들 사이 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등본 1. 갑 제2호증

1. 갑 제3호증 인증서

1. 갑 제4호증 합의각서

1. 갑 제5호증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1. 박○○ (서명 또는 날인)

2. 정ㅇㅇ (서명 또는 날인)

|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기 간 | ○○년(☞소멸시효일람표) 'www |
|-------|-----------------------------------------------------------------------------------------------------------------------------------------------------------------------------------------------------------------------------------------------------------------------------------------------------------------------------------------------------------------------------------------------------------------------------------------------------------|-------------|--------------------|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
| 비 용 |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
| 불복절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 |
| 및 기 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
| 기 타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음(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1999. 9. 17. 선고 99다 21738 판결). | |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

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항 1980.1.15. 선고 79다1799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9. 3

선고 98다3217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